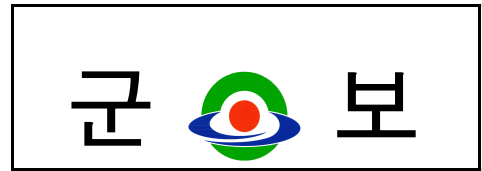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181호 2019. 8. 5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통행제한 공고(예천군 공고 제2019-883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통행제한 공고(안)

도로법 시행령 제77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
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5일

공고자 예 천 군 수



노선번호	노선명	교량명	위 치		연장 (m)	준공 년도	제한내용		
			읍면	리			제한톤수	기간	사유
군도8호선	가야~고산	장송교	개포	입암	15	1975	28.8톤이상 (노선버스제외)	2019.8.5. ~ 교량개체(개량) 시까지	내하력 부족
우회도로		리도203호선 <--> 장평교 <--> 리도201호선 <--> 지내교 <--> 군도8호선							
농어촌도로 304호선	문곡선	유포교	유천	화지	19.2	1970	37.5톤이상 (노선버스제외)	2019.8.5. ~ 교량개체(개량) 시까지	내하력 부족
우회도로		금리 <--> 가동1교 <--> 군도8호선(화지리)							

